



육군과 조선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.)는 군사학 발전, 군사전문가
저변확대 및 우수 군 간부 육성을 위하여 군사학과 개설 및 운영에
관한 공동노력과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 1조(목 적)

본 합의서는 육군과 조선대학교간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 군사학 발전과
군사학과 운영에 관한 상호 협력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교류 · 협력분야)

1. 양 기관은 군사학 학문 발전과 효율적인 군사학과 운영을 위해
상호 적극 지원한다.
2. 양 기관 간의 교류 · 협력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가. 군사학 학문 및 교육체계 발전 등 학문적 교류
나. 학생 모집 및 교수 추천 등 인적자원 협력
다.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

제 3조(군사학 및 교육체계 발전)

1. 대학은 군사학 및 교육체계 발전을 위해 군사연구소 설치와
군사학 학위(학사, 석사, 박사) 과정을 개설한다.
2. 대학은 군사학 발전 세미나를 매년 개최한다.
3. 대학은 장교임관에 필요한 군사학 이수과목과 교과과정을
육사 · 3사교의 장교 양성과정에 준하여 편성한다.

제 4조(학사과정 정원)

1. 군사학과 학사과정 정원은 남학생 40명으로 한다.
2. 대학은 군사학과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육군본부의
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조(신입생 선발)

1. 대학은 군사학과 신입생 선발업무를 주관하고, 육군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검증을 지원한다.
2. 군사학과 신입생 선발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신입생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.
 - 나. 1차 선발은 대학 책임으로 입시전형에 따라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여 육군에 통보한다.
 - 다. 2차 선발은 육군 책임으로 대학에서 통보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검증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다.
 - 라. 최종선발은 대학 책임으로 1·2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발하되 수능(국어, 영어, 수학) 평균 5등급 이상인 자 중에서만 선발한다.

제 6조(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및 학사관리)

1. 육군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한다.
 - 가. 육군은 자격검증을 거쳐 군사학과에 최종 합격한 인원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한다.
 - 나. 육군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된 자에게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되, 대학 등록금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한다.
 - 다. 육군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사유 발생시 심의를 통해 해임하고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회수한다.
2. 대학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한다.
 - 가. 대학은 학기별 평균 C학점(70/100점) 미만자와 대학에서 정한 졸업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한 자를 육군에 통보한다.
 - 나. 대학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해임된 자의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육군에 반납토록 협조한다.
 - 다. 대학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대학의 장학금, 기숙사 입주, 자기개발 여건보장 등 복지 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한다.

제 7조(군 부대 위탁훈련)

1. 양 기관은 우수한 군 간부 육성을 위해 군 부대 위탁훈련을 10일 범위내 상호 협의하에 시행한다.
 - 가. 육군은 협약대학 군사학과 1·2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부대 운영을 고려하여 위탁훈련을 지원한다.
 - 나. 대학은 육군이 지정한 군 부대와 위탁훈련을 실시하되 학생들의 안전과 소요예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.
2. 육군과 대학은 위탁훈련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둔다.

제 8조(교수 추천 및 선발)

1. 양 기관은 협의하에 군 관련 전문교수를 선발하되, 대학은 군 관련 전임교수 2명 이상, 계약직 교수 2명 이상을 예비역 교수로 채용한다.
2. 군 관련 교수 선발절차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대학은 육군에 군 관련 전문과목 담당 예비역 교수 추천을 의뢰한다.
 - 나. 육군은 대대급 이상 부대지휘 경험과 인성 및 품성을 갖춘 전문가를 소요 대비 2배수 이상을 대학에 추천한다.
단, 대학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기관의 협의하여 추천한다.
 - 다. 대학은 육군 추천인원 중 심의를 통해 최종 선발 후 채용한다.

제 9조(군사학과 운영 협의회)

1. 양 기관은 군사학과 발전을 위해 운영 협의회를 운영한다.
 - 가. 협의회는 운영위원과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나. 운영위원은 육군의 인사기획근무차장과 대학의 교무(기획)처장이며 실무위원은 육군의 획득정책과장과 대학의 군사학과장으로 한다.
 - 다. 협의회장은 운영위원중 양 기관 추천을 받아 참모총장이 정한다.
2. 협의회는 본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되며 각각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3.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.
 - 가. 군사학 학문 및 교육체계 발전에 관한사항.
 - 나. 신입생 선발, 교과편성, 교육제도 평가, 군사학과 경쟁력 제고방안 등.
4. 양 기관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둔다.

제 10조(군사학과 운영 및 교육제도 평가)

1. 육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매년 군사학과 운영 및 교육제도를 평가한다.
 - 가. 평가계획은 협의회와 공동으로 수립한다.
 - 나. 평가는 육군이 매년 학사운영평가와 병행 실시한다.
2. 육군은 평가결과 미흡대학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행정조치 한다.
 - 가. 육군은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대학에 시정 및 권고한다.
 - 나. 육군은 2년 연속 미흡사항 발생대학의 군사학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11조(비밀유지)

1.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되며,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.
2. 본 조항은 협약이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 12조(협약기간 및 해지)

1.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 - 가. 협약서는 3년 단위로 재협약 한다. 단, 개정소요가 없을 경우 기존 협약서는 유효하다.
2. 육군은 대학이 2년 연속 군사학과 정원의 80% 이상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지 못했을 경우 정원을 조정한다.
3. 육군은 대학이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, 육군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육군과 대학의 대표자는 2017년 5월22일 아래와 같이 서명하였음.

부 칙

1. 「군 부대 위탁훈련」 규정

2. 「군사학과 운영 협의회」 규정

조 선 대 학 교

총 장 강 동 완



육 군 참 모 총 장

대 장 장 준 규

